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기 술 안 보 과)	국무위원 방문규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연 월 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산업기술대상기관이 산업기술 침해 발생시 뿐 아니라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업기술보호법’)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(별표 제7호서식)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신고내용 수정(별표 제7호서식 수정)

1)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는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(강행규정)

2)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수정

* (현행) 신고내용: 침해내용 → (변경) 신고내용: 침해내용 또는 침해우려내용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침해내용”을 “침해내용 또는 침해 우려내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침해내용	침해내용 또는 침해 우려내용

산업기술침해신고서(개정 전)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
신고인	기관명		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		
	소재지	본사		
		(전화번호:)		
	사업장			
	(전화번호:)			
신고내용	침해기술	[] 국가핵심기술		
	유형	[]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		
	침해내용			
	조사 및 조치 요청사항			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정보수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➔	접 수	➔	심사 및 협의	➔	결 정	➔	통 보
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-	---	-----	---	-----

신고인

처 리 기 관: 산업통상자원부/정보수사기관의 장

산업기술침해신고서(개정 후)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
신고인	기관명		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		
	소재지	본사		
		(전화번호:)		
	사업장			
	(전화번호:)			
신고내용	침해기술	[] 국가핵심기술		
	유형	[]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		
	침해내용 또는 침해우려내용			
	조사 및 조치 요청사항			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정보수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➔	접 수	➔	심사 및 협의	➔	결 정	➔	통 보
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-	---	-----	---	-----

신고인

처 리 기 관: 산업통상자원부/정보수사기관의 장